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정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819

발의연월일: 2024. 9. 9.

발 의 자:이정문・박홍배・박 정

조승래 · 서영석 · 이학영

이연희 • 이훈기 • 문진석

이인영 · 임광현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ESG(Environment, Social, Governance)투자는 사회적 책임을 금융시장에 도입하여, 투자 결정 단계에서 재무적 요소와 함께 환경·사회·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리스크를경감시키고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투자 원칙임.

이러한 사회적 책임투자는 2005년에 UN에서 6가지 투자 원칙(UN PRI)을 천명한 이후 서명을 통해 세계 각국 및 기업에 확산되는 추세에 있고, 국내에서는 국민연금이 법 개정을 통해 2015년부터 도입하고 있으며, 해외 국부펀드 중에서 노르웨이의 정부연기금(GPFG)등 주요연기금에서 도입하고 있음.

이에 보훈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환경·사회·지배구조 요소 등 사회책임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장기적인 수익률을 제고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7조제5항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보훈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6항) 중 "제5항"을 "제6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8항(종전의 제7항) 전단 중 "제5항"을 "제6항"으로, "제6항"을 "제7항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9항(종전의 제8항) 중 "제6항"을 "제7항"으로 한다.

⑤ 제4항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·사회·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기금의 운용・관리) ① ~	제7조(기금의 운용・관리) ① ~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⑤ 제4항에 따라 기금을 운용
	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
	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
	<u>자대상과 관련한 환경·사회·</u>
	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
	<u>수 있다.</u>
<u>⑤</u> (생 략)	<u>⑥</u> (현행 제5항과 같음)
<u>⑥</u> 국가보훈처장은 <u>제5항</u> 의 사	<u>⑦</u> <u>제6항</u>
업을 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	
법」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	
공단 등 공익법인 또는 한국보	
훈복지의료공단이 자본금의 2	
분의 1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	
한 회사에 위탁하여 사업을 하	
게 하거나 기금으로 법인을 설	
립하여 사업을 하게 할 수 있	
다.	<u></u>
<u>⑦</u> 국가보훈처장은 <u>제5항</u> 의 사	<u>⑧</u> <u>제6항</u>
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<u>제6항</u> 의	<u>제7항</u>
법인 등에 기금재산을 현물(현	
물)로 출자하거나 출연(출연)할	

수 있다. 이 경우 그 가격결정	
은 「국유재산법」 제44조에	
따른다.	
<u>⑧</u> <u>제6항</u> 의 경우 해당 법인이	<u> ⑨</u> 제7항
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는	
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」	
제22조를 준용한다.	
<u>⑨</u> (생 략)	◎ (현행 제9항과 같음)